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맞춤 안내〉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4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5.
3. 회부연월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로부터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받도록 함(안 제12조의3제4항).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5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규정하러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3.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신청 철회 방법, 공공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는 노인, 장애인, 보호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¹⁾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장에서는 국민이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을 신청하거나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공공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이 미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신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전동의를 하는 경우 추후 국민 개인별 상황 변화에 따라 별도의 공공서비스 이용신청 없이도 본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공공서비스의 이용 혜택을 두텁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안 제12조의3의 조 제목 및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음.

1) 「전자정부법」 법률 제12346호, 2014.12.28. 일부개정, 2014.7.29. 시행

안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해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주민등록·가족관계·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을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것으로 표현²⁾하고 있으나, 등록시스템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목적을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로 표현하고 있음.

안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안 제4항은 안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있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사전동의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을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동

2) 「전자정부법」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의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³⁾ 국민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장기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5항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도입에 따라 현행 제1항에 규정된 관련 시스템⁴⁾의 목적과 명칭을 변경하고,⁵⁾

안 제6항은 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있음.

3) 「전자정부법」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⑥ (생략)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③ (생략)

4) 「전자정부법」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5) 안 제12조의4도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도입에 따라 현행 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개정 사항	현행법	개정안
조 제목 변경	제12조의3(정보공개 담당자의 보호)	안 제12조의 3(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도입		-안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u>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확인</u>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u>선제적으로 안내</u>(이하 “<u>공공서비스 맞춤 안내</u>”라 한다) 할 수 있음.
자료 요청의 목적 변경 (시스템의 구축·운영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u>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u>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u>사전동의</u>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u>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u> 이를 신청한 자(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라 한다)의 <u>사전동의</u>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국민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목록 확인		-안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u>공공서비스 목록</u>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함.

개정 사항	현행법	개정안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준수사항 명시	-제3항- ○제2항에 따른 <u>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함.</u> -제4항-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봄.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 제2항에 따른 <u>사전동의</u>를 받을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u>을 구분하여 <u>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u>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3.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공공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목적 변경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반영)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u>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u>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안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 제12조의2제1항의 <u>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u>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하 “<u>공공서비스 관리 시스템</u>”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시범사업 규정 삭제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하위 법령 위임사항의 구체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반영)	-제6항- ○<u>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안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신청 철회 방법,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2조의3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신청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은 유출될 경우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42조의2⁶⁾는 그 처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과세자료의 경우 수집목적 외 제3자 제공에 있어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⁷⁾,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⁸⁾ 등 유

6)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7)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

사업법례가 있음.

둘째, 안 제12조의3제5항 전단은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다.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④ (생략)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안 제12조의4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두 조항은 내용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3년간 등록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온라인 (PC, 모바일)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
2022년	4,544,267	4,458,935	85,332
2023년	2,919,309	2,886,921	32,388
2024년	1,768,669	1,749,352	19,317

자료 :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39